소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 항목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3조제2항, 별표 3)

나.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중 '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98호, '20.10.1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 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 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규제심사 비대상, '21.1.14.)

(2) 행정예고(공고 제2021-47호, '21.2.5.)

소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9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초산에틸 등 4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식품용 살균제 및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일반사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및 폭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1)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안식향산에 대한 천연유래로 인정 필요
2) 일반원칙 중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신설(Ⅰ. 3. 5) (4))
3) 천연유래 입증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민원 해소

나. 초산에틸 등 4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식품첨가물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초산에틸"을 식용유지 추출 및 다류 또는 커피의 카페인 제거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가. 초산에틸)
3) "이소프로필알콜"을 식용유지 추출 목적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가. 이소프로필알콜)
4) "니신"을 두류가공품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가. 니신)
5) "소브산" 및 그 염류를 식물성크림에 보존료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사용기준 개정(II. 5. 가.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6) 국제기준과 조화 및 식품산업 활성화

다. 식품용 살균제 관련 사용기준 정비

1) 식품용 살균제의 안전한 사용 및 오용 방지를 위한 사용기준 정비필요
2) 식품용 살균제를 직접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정(II. 2. 4) 및 8))
3) 식품용 살균제의 안전한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라.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 관련 규정 정비

1)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및 민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 용어 정의 추가 및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조성분 규정

명확화 등 제조기준 개선(I. 2. 5) 및 III. 1. 1), III. 1. 2) (4))

3)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를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금하고, 세척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사용기준 개선(III. 2. 1)~4))

4)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및 민원이해도 제고

마.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 시험법 및 푹신아황산 시액의 제조방법 개선

1)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등 개선 필요

2) 5'-리보뉴클오티드이나트륨 등 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개정(II. 4. 가.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 5'-이노신산이나트륨, 제삼인산칼슘, 파프리카추출색소, 푸마르산제일철,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효모)

3) 밀납 등의 성분규격 시험법에 사용되는 푹신아황산시액의 제조방법 개정(V. 2. 푹신아황산시액)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535호, 2020.12.4. (2020.12.4.~2021.2.3.)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9.24.)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1.2.17~22.) : 원안의결

소식 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3호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동 고시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0년 9월 2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가.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안 제2조)

적용범위는 수산동식물(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과 조류를 말한다) 및 단순 가공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나.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안 제3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이행을 위해 양국이 접촉창구를 운영함

다.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방법 마련(안 제4조)

1)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은 등록된 제조업체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노르웨이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노르웨이 정부는 등록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식약처 현지실사도 보장함

라. 노르웨이 수입수산물 위생증명서 규정 마련(안 제5조)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전자증명서 포함)를 발급하도록 함

마. 노르웨이 수입수산물 제품 표시 방법 마련(안 제6조)

노르웨이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인쇄되거나 표시하도록 함

바. 노르웨이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안 제7조)

1)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노르웨이는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합동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노르웨이 식품안전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체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1-046호, 2021. 2. 3(2020. 2. 3 ~ 2. 26)

2) WTO 통보 비대상

3)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1 - 92호(2021. 1. 8)

소식 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5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개별인정형 원료의 제조공정 효율화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료성 제품 제조를 허용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원료를 추가하며,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을 현행화함. 또한, 개별인정형 원료의 일일섭취량을 고시형 원료에 추가 등재하고, 시험법 개정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 ·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별인정형 원료의 원료성 제품 제조 허용(안 제 2. 3. 2))

1) 개별인정형 원료는 과당, 전분, 포도당 등의 기타원료를 혼합한 원료성 제품을 제조할 수 없음
2) 개별인정형 원료도 고시형 원료와 동일하게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변경
3) 개별인정형 원료의 제조공정 효율 증대 및 원료 판매 활성화

나. 영양성분의 원료 추가 등재(안 제 3. 1. 1-15~1-16)

1) 식품첨가물 중 영양강화제로 분류되는 무기질의 일부가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스테아린산칼슘, 아스코브산칼슘 및 스테아린산마그네슘을 건강기능식품의 칼슘과 마그네슘의 원료로 추가
3) 사용가능한 영양성분의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출시 가능

다. 단백질의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 변경(안 제 3. 1-27)

1) 아미노산스코아 환산 기준의 현행화가 필요함
2) 필수아미노산 필요량을 국제기준 값으로 변경하고 아미노산스코아 계산 예시를 추가함
3) 단백질 제품 관리 기준의 명확화 및 이해도 상승

라. 개별인정형 원료의 기준 · 규격 추가 등재(안 제 3. 2. 2-16)

1) 일일섭취량, 기능성내용 등을 추가로 개별인정 받은 경우에 일정기간 경과 후 고시형 원료의 기준 · 규격으로 등재함
2)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인정내역을 해당 고시형 원료에 반영
3) 고시형 원료의 일일섭취량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

마. 시험법 개정(안 제 4. 3. 3-43, 3-62, 3-74)

1) 함량 보정계수 제시, 계산식 변경 및 검출 이온 변경 등 시험법 개정이 필요함
2) 총(-)-Hydroxycitric acid, 깅콜릭산, 알파에스1카제인(αS1-casein)(f91-100)에 대한 시험법 개선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0-543호, 2020. 12. 7.(2020. 12. 7. ~ 2021. 2. 8.)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기준 · 규격 분과 심의: 2021. 2. 19. ~ 2. 23.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국조실 접수번호 제2020-5543호)

소식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최근 국내 비브리오 패혈증 식중독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을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구성 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하여 규정의 준수율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최근 새로운 형태의 신제품 및 융합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행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 · 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 5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안 제1. 4. 1)]

1) 식품원료 분류표 중 혼용되어 표시된 항목에 대한 표준화 필요
2) 식물성 원료 분류의 개정
3) 식물성 원료 분류 항목의 표준화로 농약 등의 기준 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

나. 바로 먹는 수산물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설정 [안 제2. 3. 4) (2) 다, 제6. 5. 가) (5)]

1)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패혈증 식중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비브리오균 규격 신설 필요
2)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위생 처리한 수산물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직접 제공하는 조리식품에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콜레라 규격 신설
3) 식품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중독균의 상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1) 보존 및 유통기준의 내용이 연관성 없이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어 가독성 저하로 규정 사용자의 불편 초래
2) 일반기준, 보존 · 유통온도, 보존 · 유통방법, 유통기간 설정 순으로 구성체계를 변경하고, 식품별 온도기준을 도표화
3) 보존 및 유통기준의 가독성 향상으로 규정 준수율 및 신뢰도 제고

라. 식품별 정의 및 제조 · 가공기준 개정[안 제5. 1. 4) (2), 제5. 3. 3-1 1), 제5. 3. 3-1 3) (1), 제5. 3. 3-1 4) (4), 제5. 3. 3-2 34) (1), 제5. 13. 13-2 1), 제5. 13. 13-2 4) (2), 제5. 13. 13-4 4) (1), 제5. 13. 13-5 1), 제5. 15. 15-4 3)]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제

조 · 가공기준 개정 필요

2) 캔디류의 원료에 과즙을 추가하고, 캔디류가 감미의 기호성 제품임을 명확히 하도록 정의 개정

3)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제조시 알코올 사용기준 명확화

4) 기타 코코아가공품의 범위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정의 개정

5) 소스류보다 식초, 카레(커리), 향신료가공품, 고춧가루 및 실고추의 식품유형이 우선 적용되도록 소스류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6) 마요네즈 제조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7) 건조한 고추를 짓찧어 빻은 입자가 큰 제품도 고춧가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8) 카레(커리)가 향신료가공품보다 식품유형이 먼저 적용되도록 향신료가공품의 정의에 단서조항 신설

9) 주정 제조시 '주세법'에 따른 첨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기준 신설

10) 식품별 정의 및 제조 · 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 및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에 대한 식품원료 목록 등재 필요

2) 울릉산마늘(Allium ulleungense H.J.Choi &N.Friesen), 위트루프(Cichorium intybus L. var. foliosum), 얼룩새우(Penaeus monodon), Pig faced leather jacket(Paramonacanthus Choirocephalus), Starry triggerfish(Abalistes stellaris) 등 5품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사용부위의 명확화 등 식품원료목록 정비를 통해 사용대상 명확화

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9) 델타메트린, (26) 디페노코나졸,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6) 사이퍼메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8) 알라클로르,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33) 테부코나졸, (192) 프로피코나졸,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09) 테플루벤주론,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0) 크레속심메틸,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9) 피리메타닐, (275) 뷰타클로르,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32) 클로티아니딘, (334) 트리넥사팍에틸,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8) 티아클로프리드, (342) 플루미옥사진,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73) 스피로메시펜,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1) 만디프로파미드,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3) 피콕시스트로빈,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61) 벤조빈디플루피르,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68) 티아페나실, (469) 플루트리아폴, (487) 퀴녹시펜, (508) 메펜트리플루코나졸, (509) 브로플라닐라이드, (516) 펜피콕사미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글루포시네이트 등 7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①, 별표 5 중 (29) 오르메토프림, (47) 하이그로마이신B, (72) 트리클로르폰, (76) 페닐부타존, (103) 플루닉신, (104) 멜록시캄, (105) 프레드니솔론, (110) 덱사메타손, (114) 톨페남산, (117) 설피린, (126) 아미노피린, (127) 안티피린, (135) 트리암시놀론, (141) 페나세틴, (143) 아세트아닐라이드, (145) 난드롤론, (146) 알트레노제스트, (162) 안트라닐산, (166) 아미노메탄설폰산, (170) 요오드퀴놀린설폰산, (171) 플루메타손]

1) 과학의 발달로 안전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필요
2)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
3) 오르메토프림 등 2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용도별 분류 개정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축 ·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6 중 (101) 디메토모르프, (102) 메트라페논, (103) 벤조빈디플루피르, (104) 벤타존, (105) 보스칼리드, (106) 비터타놀, (107) 사이프로코나졸, (108) 사플루페나실, (109) 세닥산, (110) 아이소피라잠, (111) 아족시스트로빈, (112) 옥사티아피프롤린, (113) 퀴녹시펜, (114) 테부코나졸, (115) 트리플루메조피림, (116) 페나미돈, (117) 펜디메탈린, (118) 펜헥사미드, (119) 프로파모카

브, (120) 플루오피콜라이드, (121) 플루트리아폴, (122) 플룩사피록사드, (123) 피라클로스트로빈, (124) 피콕시스트로빈, (125) 사이프로디닐, (126) 클로르프로팜, (127) 펜티오피라드, (128) 플루미옥사진]

1) CODEX 등 국제적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국내 기준이 미설정된 축산물 중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성분 28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축산물 중 농약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8. 4, 4.4 4.4.1 101), 제8. 4. 4.27, 제8. 4. 4.28, 제8. 6. 6.12. 6.12.1 6.12.1.8 가, 제8. 6. 6.12. 6.12.1 6.12.1.8 사, 제8. 7, 제8. 8. 8.3. 8.3.45]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비브리오 패혈증균 및 비브리오 콜레라 규격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3) 벌꿀의 탄소동위원소비율 시험법 중 단종된 표준품 대체 및 계산식 추가
4) 잔류농약에 대한 다성분 시험법 확대 등 농약 시험법 전면 개정
5) 축산물 중 잔류물질 및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신설 · 개정에 따른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잔류허용기준과 시험법 상의 농약 명칭이 일치하도록 용어 통일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578호(2020. 12. 23. ~ 2021. 2. 22.)
공고 제2021-77호(2021. 2. 18. ~2021. 3. 12.)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 2021. 3. 4. ~ 3. 9.(서면)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21. 3. 11.
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1. 3. 16.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1. 3. 17. ~ 3. 19.(서면)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0-6072호 (2020.12.18.)
(2)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1-684호 (2021.2.10.)

소식 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7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통일화하여 운영하고, 농지 · 용수 · 자재의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잔류농약 분석법 개정(안 Ⅱ. 1. 1.1.)

1)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분석법의 통일화 필요

2)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농약 분석법을 따르도록 함

3) 잔류농약 분석법 통일로 시험검사의 일관성 확대

나. 농지 · 용수 · 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적용(안 Ⅱ. 1. 1.2.)

1) 농지 · 용수 · 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법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기관장이 정한 방법 및 국제적 사용되는 방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 · 용수 · 자재에 대한 분석법 근거 마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부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 고　제 2021-78호,　2021. 2. 18. (2021.2.18.~2021.3.12.)

발췌 및 정리: 방우석(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